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6037 주주권확인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1. △△△
2.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2가단2851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5. 21.
판 결 선 고 2014. 6.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차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주식회사 등을 설립한 ◇◇그룹의 창업주이고, 자녀로 장남 ***, 장녀 @@@, 차남 ○○○을 두었다. 피고 △△△ 는 ○○○의 배우자이고, 피고 ◇◇◇ 는 피고 △△△와 ○○○의 딸이다.

나. 원고는 1999. 12. 15. ◇◇버스 주식회사(이하 '◇◇버스'라 한다)를 운영하던 □□□□으로부터 ◇◇버스의 주식 및 경영권 전부를 8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와 같이 매수한 ◇◇버스의 주식 10,000주는 원고가 4,800주, 망인이 5,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버스를 인수하면서 2000. 2. 18. ○○○은 ◇◇버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6. 2. 18. 퇴임하였고, 2009. 3. 31.부터는 ◇◇버스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라. ○○○이 2011. 10. 16. 사망함에 따라, ◇◇버스 주식 중 ○○○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은 그 배우자인 피고 △△△에게 3/5 지분인 3,120주, 피고 ◇◇◇에게 2/5 지분인 2,080주씩 각 상속되었고, 피고들은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각 명의변경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버스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 전액을 원고가 출연하였으나 편의상 이 사건 주식을 차남인 ○○○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의 운영

에 관여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온 사람은 원고이고, ○○○은
◇◇버스의 관리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원고이므로 명의수탁자인 ○○○의 상속인들
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버스의 인수 직후부터 사주로서의 역
할을 다해왔다. 피고들은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
았는바,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주주는 피고들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변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를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주주
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주식인수대금의 납입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의 기초된 원인관계로서는 주식인수대금의 증여 등의 법률관계를 상정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의 납입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제3자를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관계에 기초한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
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2)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
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버스의 전 소유자인 □□□과 직접 ◇◇버스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4, 5,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받은 주식매매대금 영수증 및 정산서, □□□에게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장남 ***이 2006. 2. 18. ◇◇버스의 이사에 취임하자 ○○○은 이사에서 물러나 그 후 감사로 등재된 사실, 원고가 ◇◇버스에 2012. 9. 25., 2012. 11. 6.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레미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레미콘의 주주이던 △△△, ⊖⊖⊖ 등을 상대로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을 제1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6, 7,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14호증의 1 내지 5,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차남인 ○○○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그 실질주주는 여전히 원고라는 취지의 갑 제7호증, 제17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나머지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2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나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② 원고는 편의상 ○○○에게 ◇◇버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고가 당함에 이르러 밝히고 있는 명의신탁 경위는 버스 경쟁업체들간에 노선 경쟁이 치열해지자 원고와 같이 동일인이 여러 개의 버스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이로 인해 노선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의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버스의 주식 중 48%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2%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도 원고와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게 되리라 기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버스를 인수할 당시인 1999년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8촌 이내의 혈족(동일인관련자)과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기업집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가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주식회사 ##레미콘, 주식회사 ●●레미콘의 주주명부에는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아닌 사람들만 차명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들과 아들인 ○○○만이 차명주

주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버스 사이의 차명주주의 구성, 주식 비율 등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원고는 ◇◇버스의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원고가 출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금 중 일부는 ○○○ 명의의 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금이 원고의 개인적인 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원고는 위 ○○○ 명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 또한 ◇◇그룹 산하 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버스의 대표이사인 제1심 증인 ●●●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회사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종국적으로는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이라고 증언하였다.

⑥ ○○○은 ◇◇버스의 등기된 이사로서 ◇◇버스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마다 ○○○의 인장을 날인하고 공증법률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았으며, 원고의 장남 ***이 2006. 2. 18. ◇◇버스의 이사에 취임한 이후로도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다.

⑦ 원고는 ◇◇버스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였음을 명의신탁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가 ◇◇그룹의 창업주로서 회장의 지위에 있고 ◇◇버스를 직접 인수하여 아들인 ○○○에게 기업경영 방법 등을 전수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버스의 주요 경영사항을 원고가 직접 결정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⑧ 장남인 ***이 과거에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장녀인 @@@ 역시 여성인 관

계로, 차남인 ○○○이 1990. 1. 대학입학 시절부터 ○○화물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원고를 도와 근무하였고 1999년경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로 ○○그룹 계열사들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에 순차적으로 취임함으로써 서른살의 이른 나이에 ○○그룹의 계열사 경영을 책임지게 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버스를 인수할 당시 원고는 차남인 ○○○에게 재산분배 내지 증여를 할 의사로서 원고가 자금을 지원하여 ○○○ 명의로 ◇◇버스의 주식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에게 ◇◇버스의 실질적인 소유나 경영권을 이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화
	판사	서희경

판사 손승우

별지

목록

상호 : ◇◇버스 주식회사

본점 : 경북 영덕군

주식 : 망 ○○○ 명의의 ◇◇버스 주식회사 보통주식 5,200주 끝.